###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2

발의연월일: 2020. 10. 26.

발 의 자:신동근·백혜련·김남국

김용민 · 김종민 · 박범계

박주민 · 소병철 · 송기헌

최기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 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상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59조제4항·제5항, 제61조제1항, 제61조의2 및 제84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및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검찰"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검찰에"를 "관할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중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을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	<u>.</u>
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	
기관으로 본다.	<u>.</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	
급 법원, 「헌법재판소법」	
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	
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u>「감</u>	
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u>한다) 및 그 밖에 지위·성</u>
	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라.·마.(생략) 2. ~ 9.(생략) 제59조(신고의 처리)① ~ ③ / (생략)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 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u>검찰</u>에 고발을 하여야한다.

#### 1. ~ 6.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 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 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⑦ (생 략)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저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 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

하는 기관
라.•마.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검찰, 수사처,</u>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
1. ~ 6. (현행과 같음)
⑤
<u>관할 수사기관</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①
에U1고(/배경건경/ 및

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 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 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 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 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 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 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 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신 설></u>

<u>관할</u>
<u>수사기관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 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 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u>국회·법</u>
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
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
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
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야 한다.

<u>할</u> 수 있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u>제2</u> 3	조제1
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	
•	